

마. 대부료의 요율 조정(안 제30조 내지 33조)

- 1) 재산의 대부(사용)료 부과요율을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
 -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이상
 - 예외 : 40/1,000(청사 구내자산), 25/1,000(주거용건물),
10/1,000(농경지 실경작자, 민자유치사업 등)
- 2) 대부(사용)료가 전년대비 10%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50/100이내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(계산식 단순화)
 - 경작용 50/100, 주거시설45/100, 기타40/100

바. 대부료 등의 납기 명시(선납원칙) 및 분납제도 활성화(안 제34조)

- 1) 대부(사용)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, 2차년도부터는 30일 이내
- 2) 대부(사용)료 50만원 초과시 2회 ~ 4회 분납제 실시(채납방지)

사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(안 제34조)

- 1)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된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1천㎡이하 토지
- 2)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부지경계선이 1/2이상 접한 경우의 토지
- 3) 농·축·임·수산업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필요부지로 단체 및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

아.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 조정(안 제38조)

- 1) 10년 이내 기간 연4% 이자로 분할 납부 : 공용·공공용 등
- 2) 10년 이내 기간 연6% 이자로 분할 납부 : 공장용지 매각 등
- 3) 10년 이내 기간 연5% 이자로 분할 납부 : 잡종재산 교환자금 등
- 4) 20년 이내 기간 연3% 이자로 분할 납부 : 외국인 투자기업 매각 등

자. 기타 제개정 사항(안 제47조, 제60조 및 제61조)

- 1) 관사 : 군수, 부군수 사용 외 소속 공무원(공중보건의사)을 포함
- 2) 변상금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
- 3)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「국유재산법」과 형평성 유지토록 조정(1천만원 한도, 전당 5/100 ~ 10/100 상당액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299호 (2006. 5. 1. ~ 2006. 5. 22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경남도 회계과-1839(2006. 1. 26.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 법령에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, 처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.
- 정부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,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건물 등 공유재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미약했고 그 제도가 주민과 지방보다는 관청과 중앙위주로 되어있는 등의 문제점과 분권화, 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.
- 따라서 상위법령이 달라짐에 따른 조문의 근거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심의대상,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, 대부료의 요율, 매각대금 분할납부 제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, 매각대상 범위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사와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또는 정리함이었습니다.
-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 난 사항은 없었으며 제출자로부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조례(안) 제46조 별표의 군의회 청사면적 기준에 의원사무실의 기준면적이 별도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,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, 수정은 가능한 것인지?
- 답 :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회청사의 면적 기준 중 의원사무실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준용 기준에 의거 충분한 사무실의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6.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